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3 선고 2021가단532311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용석

변 론 종 결 2022. 5. 30.

판 결 선 고 2022. 6. 13.

## 주 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319,400원 및 그 중 13,436,243원에 대하여 202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3,611,112원에 대하여 202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8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E 사이 2021. 3. 3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8. 11. 접수 제39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매월 대금결제일까지 그 대금을 변제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거래약정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는 카드이지론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21. 11. 11. 현재 위 약정들에 따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구<br>분<br>카드번호, 계좌번호 | 연체원금<br>(미청구원금) | 연체수수료(<br>약정이자) | 연체료<br>(연체이자) | 수수료<br>(종도상환<br>수수료, 연회<br>비/SMS) | 합<br>계     | 비고 |
|----------------------|-----------------|-----------------|---------------|-----------------------------------|------------|----|
| A 카드                 | 13,436,243      | 883,550         | 323,947       | 0                                 | 14,643,740 |    |
| 카드이지론                | 23,611,112      | 1,528,026       | 536,522       | 0                                 | 25,675,660 |    |
| 전 체 합 계              | 37,047,355      | 2,411,576       | 860,469       | 0                                 | 40,319,400 | -  |

다. 한편, 피고 C와 그 배우자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와 망인은 2020. 8. 1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C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망인은 2021. 3. 31. 재산분할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피고 C는 망인에게 2021. 4. 1.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14742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피고 C와 망인의 딸)는 2021. 6. 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1. 8. 11. 위 등기소 접수 제392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40,319,400원 및 그 중 신용카드대금 13,436,243원에 대하여 202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대여금 23,611,112원에 대하여 202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8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인과 이 사건 재산분할을 하고, 이후 망인은 피고 D와 상속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1. 8. 11. 접수 제39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와 망인이 이혼을 하면서 피고 C가 망인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양도한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